

영등포구의회
제20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4. 16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350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직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 안 제2조)

나. 편의지원사항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규정

(안 제3조~ 안 제4조)

1) 장애인공무원은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기·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다. 지원범위, 지원기준,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

(안 제5조~ 안 제6조)

- 1)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
 - 2)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함
- 라.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
(안 제7조~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, 방법,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※ 서울시 타기관 조례 제정현황: 16개 기관(서울시 포함)

- 서울시, 종로, 중구, 성동, 성북, 강북, 도봉, 노원, 마포, 강서, 구로, 동작, 관악, 강남, 송파, 강동

- 영등포구 장애인 공무원은 2018년 3월 현재 총 59명으로 중증 10명, 경증 33명이며, 장애인 고용률은 4.1%임.
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4조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 수립·운영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원을 배정하고,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며 지원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,
- 안 제8조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이 수행 할 업무 지정 범위와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, 경비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9조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지급과 목적외사용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,

2018년 3월말 현재, 영등포구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총 59명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4.1%로서, 장애공무원에게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, 근로지원인 배정,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, 근무능률 향상과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(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)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5.1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5.1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5.18.>

[전문개정 2008.12.31.]

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6.4.>

1. "장애인"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2. "중증장애인"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